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572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0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전기용품안전 기준및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안전기준 개정시 유예기간 부여기준)① 안전기준 개정시 개정된 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안전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기준변경 내용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안전인증의 표시·사용설명서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필요한 안전기준 개정시와 해당 전기용품의 구조변경이 필요 없는 안전기준 개정시에는 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2. 해당 전기용품의 구조변경이 필요한 안전기준 개정시에는 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
3. 해당 전기용품의 설계·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안전기준 개정시에는 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7238-41, FAX : 02-509-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 2008.10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549호

산업표준화법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 ①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 ① 사무국은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표준의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폐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

- 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성적이 있는 자
3.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로 4년 이상 담당한 자
 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5. 관련업계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근임원
 6. 기술표준원 단체표준 담당공무원
 7.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
- ④ 제3항 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3항 제6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
 - ⑤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 ⑥ 심의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받은 부의장은 의장이 결위시 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⑦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 각호 사항에 대한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의개최일 7인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남당사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 ① 심의회는 단체표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심의회 의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4. 기술표준원의 분야별 남당공무원
 5. 기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전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 ⑤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전문위원회는 심의회로부터 제2항 제2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검토절과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분야별 남당사로 한다.

제3장 단체표준의 제정 절차

제5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단체의 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폐지 및 단체표준 인증의 심

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석·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 ③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장선임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체의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①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체·개정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

- ① 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 ②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① 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단체표준안을 확정할 경우 사무국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을 요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
 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
 3. 규칙 제19조제2항에 적합한 관련자료
 4.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제4장 단체표준의 등록 등

제9조(단체표준안 예고)

- ① 제8조에 따라 단체의 장으로부터 단체표준 등록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국가표준정보센터 (<http://www.kssn.net>)에 다음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개정의 경우)
 4. 단체표준 제·개정안
 5. 의견제출 기한
 6.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단체표준안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다시 15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

- ① 사무국은 제9조에 따라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기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표준심의의뢰서에 의해 해당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형식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표준”이라 한다) 및 다른 단체표준과의 중복 여부, 다만, 중복이라 한은 적용범위, 종류, 성능, 방법 등의 중복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4. 단체표준의 확인·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통지서에 의해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한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표준정보센터에 등록한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6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을 제·개정한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
 4.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일자
 5. 적용범위
 6. 확정된 단체표준
- ④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표준현황표를 작성하고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치리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고,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말한다.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볼 수 없다.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 ① 단체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절차는 단체표준 제정절차에 준한다.
- ② 단체의 장은 적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요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개정일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
- ④ 사무국은 당해년도 초에 적부확인이 필요한 단체표준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센터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표준의 보급)

사무국은 규칙 제19조 제3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은 국제기준(ISO/IEC Guide 65)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2. 인증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3. 인증 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 4. 인증 심사의 사후관리 및 치분기준에 관한 사항
-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6. 인증 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8.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 9.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14조(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 ①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결과의 활용)

- ① 사무국은 매년도 단체표준 및 인증 현황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의 홍보를 위해 사무국은 단체표준 등록단체 및 인증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개발된 단체표준 중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쓸 것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권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606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8조제5항 규정에 근거하여「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2조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표준개발”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협력기관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산업표준의 작성·조사·검토 등을 위하여 협력기관에서 전문 기술 분야별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지정 요건

제3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협력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협력기관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지정요건(이하 “지정요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조직과 인력은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업무규정은 제4조의 표준개발 원칙에 따라 제5조의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표준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규정에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3호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표준개발원칙) 제3조제2호에 규정된 표준화 활동에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
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
5. 다른 표준과 중복·충돌을 피해야 하며, 유사·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인관되어야 한다.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표준개발 업무규정)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의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은 광명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정회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3조1호의 표준전담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7. 표준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9.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10.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익,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14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조(기술위원회)

- ① 협력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검토 등을 위하여 특정이해당사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표준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기술위원회는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내에 표준화 작업

받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 ④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산업표준 제정, 개정에 관한 조사·검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을 협력기관의 지정분야에 대한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기술표준원장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검토된 표준안에 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예고 등을 거쳐 법 제7조에 따라 심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장 지정 절차

제7조(신청)

- ①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협력기관으로 신청 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분야 또는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의 부분기호(대분류) 및 중분류
 2.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소관분야
-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평가·심의)

-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심의한다.
 1. 현장평가
 2. 제9조에 의한 지정위원회 심의
- ② 기술표준원장은 신청 분야 전문가 또는 품목 담당 직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1항 제1호의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의 지정위원회 심의 시에는 신청기관의 표준화 활동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정분야 또는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의 지정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또는 지정불가 등을 의결한다.
- ⑤ 기술표준원장은 심의결과가 지정불가로 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위원회)

- ① 기술표준원장은 협력기관의 지정·관리·지원 등의 업무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기관의 지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력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간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의 산업표준심의회 의 신청분야 위원
 2. 영 제10조의 전문위원회의 신청분야 위원
 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 등 임원
 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조직에 있는 자
 5. 기술표준원 해당 분야 또는 품목 담당부서의 각 과장
 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자
- ④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식기반표준과장으로 한다.
- ⑤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정 및 공고)

- ① 기술표준원장은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 주소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협력기관 운영

제11조(협력기관의 역할)

-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수요조사, 개발·검토 계획의 수립
 - 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 3.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개정 의회
 - 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 5.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 6.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표준개발 절차)

-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4조제4항의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7조 산업표준심의회에 해당 기술심의회에 상징한다.
 - ③ 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상징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기술표준원장은 동 기술심의회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4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치협의를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대표자, 양도 등에 의한 협력기관의 지위 변경
 2. 협력기관의 소재지 변경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 받은 때와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기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기관의 준수사항)

- ① 지정된 협력기관의 장은 제3조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④ 협력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자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보관)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발생한 기록본(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영구보관 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기관의 관리) 기술표준원장은 협력기관이 제3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17조(지정 취소 등)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영 제18조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사항이 발생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제9조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항이 정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만료인 3월 이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에서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19조(협력기관 지원 등)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은 표준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표준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경비의 예산지원
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지원
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4.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구축지원
5.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제20조(수당 및 예비) 기술표준원장은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제9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예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

①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공고 제2006-0231호 : 2006.10.2)은 폐지한다.

② 제1항의 종전 요령에 따라 지정·공고된 표준개발협력기관은 추가·변경된 지정요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요령에 따라 평가·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 재지정한다.

